

부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499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최종석, 이은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중현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7.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31450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2호로 마친,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4호로 마친,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제1 선택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청구)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6. 체결된 매매계약 및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1호로 마친,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2호로 마친,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4호로 마친,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2 선택적 청구(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대위청구)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1호로 마친,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2호로 마친,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4호로 마친,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에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청구원인은 선택적으로, ①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청구 또는 ② 원고의 주식회사 D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청구로서, 이는 선택적 청구병합 관계에 해당한다. 제1심법원이 위 ①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함에 따라 위 ① 부분 청구 및 ② 부분 청구가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제1심판결문 제15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F아파트"를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2018. 3. 6."을 "2017. 3. 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1) 적극재산 : 107억 6,000만 원"을 "(1) 2018. 3. 6. 기준 적극재산 : 97억 6,0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합계 132억 4,300만 원"을 "합계 131억 4,300만 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8행의 "4억 원"을 "3억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3. 원고의 주장

가. 제1 선택적 청구

원고는 D에 대하여 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물반환으로서 D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제2 선택적 청구

원고는 2019년 이후 D의 실소유자인 Y와 사이에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언니인 AA는 D로부터 F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D가 법무사사무실에 보관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4. 제1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은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것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에 D가 2018. 3. 23.까지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D 소유의 F아파트 중 2세대(M호, N호)에 관하여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계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기존의 공사대금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특정물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다툰다.

가)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8. 3. 6. D에게서 공사대금채무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같은 날 D와 사이에 나머지 공사대금채무 3억 원을 2018. 3. 23.까지 지급받되, D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D 소유의 F아파트 중 M호, N호에 관하여 즉시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이행각서 및 아파트공급계약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므로 본래 채무의 내용 및 대물변제에 의하여 그 채무가 소멸되고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 마련인데, 원고와 D가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F아파트 M호 및 N호를 대물변제조로 제공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②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인데, 원고가 2018. 3. 23. 이후 F아파트 M호 및 N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절차를 밟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D의 부탁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대신 2018. 3. 6.자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점, ④ 원고는 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뒤인 2019. 3.경 D의 실사주인 Y와

사이에 공사대금채권 등에 관하여 별도의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위 이행각서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증하기 어려운 점(위 2019. 3.경 약정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대물 담보’라고 표시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가 2018. 3. 6.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은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이행각서에 다른 약정이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대물변제약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의 무자력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8 3. 6.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총 97억 6,000만 원이고, 소극재산은 총 131억 4,3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18. 3. 6.에 가까운 2018. 1. 25. 무렵에도 D의 적극재산 가액 및 소극재산 가액이 이와 같았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에 관한 각 매매계약 당시 D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17. 3. 6. 당시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U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34억 5,000만 원은 2017. 9. 22.경 이후 R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S조합에 대한 채무 중 F아파트에 관한 채무 36억 원의 상당 부분도 2017. 6.경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자금을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17. 3. 6. 당시 D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의 각 매매계약체결일은 2017. 3. 9.이고 매매대금 또한 각 2억 1,870만 원(H호), 1억 9,000만 원(I호), 2억 원(J호)임을 전제로, 피고가 D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를 분양받아 피고나 피고의 가족들 명의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을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모친 Z이 2017. 2. 8. D 계좌로 6,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② 피고의 언니 AA가 D 계좌로 2017. 5. 22. 1억 원, 2017. 6. 26. 3,500만 원, 2017. 7. 4. 900만 원, 2017. 12. 6. 500만 원, 2018. 3. 5. 500만 원, 2018. 3. 7. 1,000만 원 합계 1억 6,4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③ 피고가 2018. 2. 1. D 계좌로 1억 원, 2018. 3. 5. D의 대표이사인 AB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8. 3. 6. 위 AB의 계좌로 합계 6억 5,000만 원, 2018. 4. 12. AC조합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9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④ 피고의 남동생 AD이 2018. 3. 6. AB의 계좌로 1억 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29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28, 30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에 관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에 관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각 2018. 1. 25.이다. 나아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2018. 3. 6.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H호의 경우 2억 1,870만 원, I호의 경우 1억 9,000만 원, J호의 경우 2억 원이며,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전용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모두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덧붙여 뒤에서 보는 것처럼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체결일 전후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계약금이거나 D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그 등기원인일자와 달리 피고가 뒤늦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37 내지 39호증)상 각 계약일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을 제37 내지 39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에 관하여 각 2017. 3. 9.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각 계약금 2,000만 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무렵 피고가 D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의 모 Z이 입금한 6,6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1여 년 전에 지급된 것이다.

③ 피고의 언니 AA가 D의 계좌에 2017. 5. 22.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정 및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D에 지급한 돈에 관하여 가계약금, 계약금 또는 운용자금 용도의 차용금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등 그 구체적인 성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피고가 2018. 2. 1. D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 날 F아파트 O호와 M호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에 의하면 총 6,000만 원의 계약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인 1억 원이 어떠한 연유로 입금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에게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위 초과 금액 4,000만 원(= 1억 원 - 위 O호 및 M호 계약금 합계 6,000만 원)이 앞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에 관한 각 계약금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중 4,000만 원(= 위 H호, I호, J호 계약금 합계 8,000만 원 - 위 초과 금액 4,000만 원)은 미지급한 것이 된다.

⑤ 이처럼 피고가 D에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는 돈은 총 12억 8,100만 원인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고, 위 총 지급액은 F아파트 6세대의 분양대금인 12억 8,240만 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⑥ 피고가 D에 분양대금으로 피고와 그 가족들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 중 상당액은 D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당시 D의 법인계좌가 가압류되었기 때문이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 및 D의 자금사정 악화로 F아파트의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기도 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러므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I호, J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2호로 마친,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4호로 마친,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6. 접수 제57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의 제1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 H호, I호, J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5. 제2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에 한하여)

가. 살피건대, 원고와 D의 실사주 Y 사이에 2019. 3.경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에 관하여 별도의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약정의 당사자도 D가 아닌 Y일 뿐이므로, D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에 관한 대물변제약정 또는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의 언니 AA가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제2 선택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청구 일부 및 기각된 범위에서의 채권자대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안혜미, 판사 허성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4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층 121.45㎡

1층 117.55㎡

2층 128.08㎡

3층 128.08㎡

4층 128.08㎡

5층 128.08㎡

6층 160.7㎡

7층 160.7㎡

8층 160.7㎡

9층 216.98㎡

10층 216.98㎡

11층 216.98㎡

12층 216.98㎡

13층 216.98㎡

14층 216.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대 308㎡(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제1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8.1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08분의 9.9092

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4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층근린생활시설

지하층 121.45㎡

1층 117.55㎡

2층 128.08㎡

3층 128.08㎡

4층 128.08㎡

5층 128.08㎡

6층 160.7㎡

7층 160.7㎡

8층 160.7㎡

9층 216.98㎡

10층 216.98㎡

11층 216.98㎡

12층 216.98㎡

13층 216.98㎡

14층 216.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대 30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3.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08분의 10.7623

3. (1종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4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층 121.45㎡

1층 117.55㎡

2층 128.08㎡

3층 128.08㎡

4층 128.08㎡

5층 128.08㎡

6층 160.7㎡

7층 160.7㎡

8층 160.7㎡

9층 216.98㎡

10층 216.98㎡

11층 216.98㎡

12층 216.98㎡

13층 216.98㎡

14층 216.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대 30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4.5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08분의 9.2944

4.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4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층 121.45㎡

1층 117.55㎡

2층 128.08㎡

3층 128.08㎡

4층 128.08㎡

5층 128.08㎡

6층 160.7㎡

7층 160.7㎡

8층 160.7㎡

9층 216.98㎡

10층 216.98㎡

11층 216.98㎡

12층 216.98㎡

13층 216.98㎡

14층 216.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대 30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8.1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08분의 9.9092

